

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11월 15일
- 회부일자 : 1999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, 시행되어 왔으나 자동차관리법의 개정('99. 4. 15)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호)
- 자동차매매업, 자동차정비업,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을 명시 (안 제4조, 제6조, 제7조)
-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중 하자보증금 예치 및 운용방법을 규정 (안 제5조)
- 자동차폐차영업소의 업무범위 및 시설기준을 명시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이는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을 보면

첫째, 자동차매매업, 자동차정비업,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명시
둘째,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매매업자의 손해변상을 위한 지급보증
방법

셋째, 자동차정비업, 자동차폐차업, 자동차폐차영업에 대한 시설기준
명시와 기타 자동차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
항으로

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